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대출종류				⑤ 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상환기간 : 년)					
⑤-1 상환유형	공제 한도	1,800만원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1년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1,500만원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1년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300만원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 방식 차입금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차입금		상환기간 연수(/) 상환기간 연수 1년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500만원	[] 기타								
		⑥ 주택취득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⑦ 저당권설정일		⑧ 주택면적		전용면적		㎡	
		⑧-1 주택 물건지				⑧-2 기준시가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소득공제 신청용	
⑬ 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⑭)					
금융회사 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아래의 ⑭ ~ ⑰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명세			⑰ 이전(연장, 전환) 당시 해당 금융회사 에서 차입한 금액		
⑭ 금융회사명 (접포명)	⑮ 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⑯ 차입금의 원금잔액	⑱ 연장, 전환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분양권의 가격)	⑲ 소득공제대상액 [⑫×(⑯/⑰)과 1 중 적은수]	
(상환기간연수: 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 주택분양권 대출 여부를 적습니다.

2. ⑤ 차입금상환기간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에 의한 최초 차입일과 최종상환 예정일을 적습니다.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과 최종 상환일을 적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상환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